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하여



글_조의현(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이사)

아래 내용은 2001년 3월23일 한국관광공사에서 본 협의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가칭)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본 협의회 이사 겸 산본연구소 소장이신 조의현님이 발표한 자료를 지면관계상 요약하여 2회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원문은 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 편집자)

다) 전문적 유지관리(보수포함)

일상; 정기청소로 제거되지 않는 지저분함을 제거하는 전문적 유지관리(년1회 이상), 이때 점검으로 확인된 훠손부분 등에 대하여 보수를 한다.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작업내용은?

- ① 위생기기를 씻어낸다. 소변기, 대변기, 세면기, 청소용기 수납장의 때와 악취 제거
- ② 배수관을 씻어낸다.
- ③ 실내를 씻어낸다.
- ④ 외부를 씻어낸다.
- ⑤ 기타 잡균을 처리한다.
- ⑥ 점검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수선·보수를 한다.

3) 일본등의 예 : 법적 근거가 애매한 공중화장실 행정

도시마다 공중화장실은 있으나, 그 설치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라는 것은 불과 「폐기물의 처리를 비롯한 청소에 관한 법률」의 제5항「시·읍·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비롯한 공중용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이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정해 놓았을 뿐이다.

즉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어느 정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의 국가기준이 없다.

공원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아동공원에 세워야하는 시설」로서 「그네, 미끄럼틀, 벤치, 화장실」을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화장실 행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화장실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게 되자 공공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도 지자체에 따라 각각이다.

그리므로 공공화장실에 관한 자료도 거의 없고, 통계적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1980년, 1986년 자료에 의하면 화장실 설치수는 인구 4,000~4,500명에 1개소로 설치하고 장소는 공원이 70%였다.

그리고 지자체 내부의 체제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중에도 이용빈도가 높은 역의 화장실에 지자체가 철도회사에 화장실 정비를 지도하게 하는 권한이 없다.

일본에서도 건축기준법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화장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

“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주동이 되어 화장실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제고 캠페인,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배포 등으로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적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관리용역회사」가 육성되도록 초기에 정부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

나 그 관리상태까지 점검하는 일은 없다.
적어도 역·민간시설의 화장실도 포함하여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4. 마치며

- 1) 매사가 그러하듯 모든 법은 법 이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장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이다. 법적인 구속력에 의하여 화장실이 유지 관리되면 감독하는 측이나 감독을 받는 측이나 모두가 피곤해지기 쉽고, 효율도 저하 되게 된다.
- 2) 설계를 포함한 화장실 건축이 유지관리와 별도로 관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용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까지를 고려한 시도가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 3) OWNER측도 유지관리에 충분한 돈을 들여야 한다. 건설비의 10%정도는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필요하고, 점차 부분적으로 유료화도 검토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이 깨끗

해진 것도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부분 증가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4)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주동이 되어 화장실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제고 캠페인,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배포 등으로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전문적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용역회사」가 육성되도록 초기에 정부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